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1
----------	-----

2019년 3월 7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12.28. 노식래 의원(대표발의)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19.1.7.

다. 상정 일자 :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19년 3월 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원격지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여비 지급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18.1.9.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가. 주요내용

- 의원 여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여비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18.1.9.)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음.

2 지방의원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의 조정(안 제5조제1항 관련 별표3)

-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국내·외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33조).
- 2018년 1월 9일, 각 지방자치단체 간 여비 지급기준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외 여비¹⁾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했을 뿐 종전과 동일하고, 국내 여비 중 일비(1일당 20,000원), 식비(1일당 25,000원)는 변동이 없으나,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운임과 숙박비는 <표-1>과 같이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통일성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그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으로 구성됨.

<표-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조정내역

개정 前	(단위: 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5,000

개정 後	(단위: 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 다만, 현재 예산 운용상 국내 여비 중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운임’은 실비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숙박비’ 상한액을 폐지하고 전면 실비로 조정²⁾되는 사항이 본 개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임.

3 종합 의견

- 이상을 종합하면, 본 개정안은 지방의원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통일성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2) 다만, 숙박비 상한액을 폐지하고 전면 실비로 조정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2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식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1
----------	-----

발의년월일 : 2018년 12월 28일

발 의 자 : 노식래, 서윤기, 강동길, 이태성,
김호진, 이성배, 양민규, 고병국,
김호평, 권순선, 봉양순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원격지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여비 지급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2018.1.9.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 여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여비 규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준용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비고

1. 서울특별시내에서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제1항 관련)

1. 국외 철도·선박·자동차 운임

구분	준용
철도	「공무원 여비 규정」 제10조제2항
선박	「공무원 여비 규정」 제11조제2항
항공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자동차	「공무원 여비 규정」 제13조제2항

2. 국외여비

구분	준용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비고

1.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2.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여비지급 기준) ①~② 생략</p> <p>③ 여비정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와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와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p>	<p>제5조(여비지급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별표 3]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철도 운임</th> <th>선박 운임</th> <th>항공 운임</th> <th>자동차 운임</th> <th>현지 교통비 (1일당)</th> <th>숙박비 (1일당)</th> <th>식비 (1일당)</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td> <td>2등 정액</td> <td>정액</td> <td>정액</td> <td>20,000</td> <td>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td> <td>25,000</td> </tr> </tbody> </table> <p>비고 : 1. 서울특별시내에서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주무관청의 장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특실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4. 수로여행 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주무관청의 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5.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p>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5,000	<p>[별표 3]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준용</th> </tr> </thead> <tbody> <tr> <td>서울특별시회의의원</td> <td>「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td> </tr> </tbody> </table>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내에서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구분	준용	서울특별시회의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5,000																																																													
구분	준용																																																																		
서울특별시회의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p>[별표 4]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철도운임</th> <th>선박운임</th> <th>항공 운임</th> <th>자동차 운임</th> <th>일비 (1일당)</th> <th>숙박비 (1일당)</th> <th>식비 (1일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의장·부위원장</td> <td rowspan="2">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살비액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살비액 </td> <td rowspan="2">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살비액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살비액 </td> <td rowspan="2">1등 정액</td> <td rowspan="2"></td> <td>가등급 40</td> <td>가등급 282</td> <td>가등급 133</td> </tr> <tr> <td>나등급 40</td> <td>나등급 207</td> <td>나등급 99</td> </tr> <tr> <td rowspan="2">의원</td> <td rowspan="2"></td> <td rowspan="2"></td> <td rowspan="2">1등 정액</td> <td rowspan="2">살비액</td> <td>가등급 35</td> <td>가등급 223</td> <td>가등급 107</td> </tr> <tr> <td>나등급 35</td> <td>나등급 160</td> <td>나등급 78</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다등급 35</td> <td>다등급 130</td> <td>다등급 58</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라등급 35</td> <td>라등급 85</td> <td>라등급 49</td> </tr> </tbody> </table>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장·부위원장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살비액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살비액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살비액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살비액	1등 정액		가등급 40	가등급 282	가등급 133	나등급 40	나등급 207	나등급 99	의원			1등 정액	살비액	가등급 35	가등급 223	가등급 107	나등급 35	나등급 160	나등급 78						다등급 35	다등급 130	다등급 58						라등급 35	라등급 85	라등급 49	<p>[별표 4]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제1항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의 철도·선박·자동차 운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준용</th> </tr> </thead> <tbody> <tr> <td>철도</td> <td>「공무원 여비 규정」 제10조제2항</td> </tr> <tr> <td>선박</td> <td>「공무원 여비 규정」 제11조제2항</td> </tr> <tr> <td>항공</td> <td>「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td> </tr> <tr> <td>자동차</td> <td>「공무원 여비 규정」 제13조제2항</td> </tr> </tbody>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여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준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서울특별시의회</td> <td>의장·부위원장</td> <td>「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td> </tr> <tr> <td>의장·부위원장을 제외한 의원</td> <td>「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td> </tr> <tr> <td></td> <td></td> </tr> </tbody> </table>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다 	구분	준용	철도	「공무원 여비 규정」 제10조제2항	선박	「공무원 여비 규정」 제11조제2항	항공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자동차	「공무원 여비 규정」 제13조제2항	구분		준용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부위원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부위원장을 제외한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장·부위원장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살비액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살비액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살비액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살비액	1등 정액		가등급 40	가등급 282	가등급 133																																																												
					나등급 40	나등급 207	나등급 99																																																												
의원			1등 정액	살비액	가등급 35	가등급 223	가등급 107																																																												
					나등급 35	나등급 160	나등급 78																																																												
					다등급 35	다등급 130	다등급 58																																																												
					라등급 35	라등급 85	라등급 49																																																												
구분	준용																																																																		
철도	「공무원 여비 규정」 제10조제2항																																																																		
선박	「공무원 여비 규정」 제11조제2항																																																																		
항공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자동차	「공무원 여비 규정」 제13조제2항																																																																		
구분		준용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부위원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부위원장을 제외한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현 행	개 정 안
<p>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의 비교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2.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에 따라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의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3.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p>